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관련 767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12월 17일
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현재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재설치 및 정비를 위한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- 가. 조례의 시행일을 2016년 4월 1일로 함 (안 부칙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(전문위원실안)
<p><신 설></p>	<p>제14조의3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: 한 면 이상 2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	<p>제14조의3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제17조의2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</p>	<p>제17조의2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</u>부터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<u>2016년 4월 1일</u>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3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 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

1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: 한 면 이상
2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

제17조의2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4조의3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: 한 면 이상 2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
<p><신 설></p>	<p>제17조의2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